

---

# 2026년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요원교육 계획(안)

---

## ■ 교육개요

### 1. 교육 목적

-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 안전요원 자격 중 수심100cm이하의 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요령을 체계적이고 워터파크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교육 주최 및 주관

- 주관 : 문화체육관광부 / 주최 : 한국테마파크협회

### 3. 교육 시기 및 장소

- 시 기 : 2026년 6월 ~ 2026년 7월 (※수요조사에 따라 변동가능)
- 교육시간 : 1회당 8시간 (09:00 ~ 19:00까지)
- 장 소 :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·업체별 예상인원에 따라 지역고려 시행  
※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여건 가능한 업체에서 동시 30명 이상 교육 신청 시 별도 방문 협의 시행 예정

### 4. 교육비

- 1인 1일 8시간 12만원(중식비, 강의장 사용료, 손해배상책임 보험료 등 제반 경비)

### 5. 교육 대상

-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만 18세 이상 건강한 자로 한다.
-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제10호 다목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중 수심이 100cm이하의 풀에 배치되는 법적 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자
- 필요에 의거 안전요원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자(테마파크업체 종사자에 한함)

### 6. 교육방법 및 내용

- 관광진흥법등 소개,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운영 및 근무요령메뉴얼 이해(이론 2시간)
- 물놀이형 테마파크 현장 근무 행동요령, 응급상황 조치요령 등 현장교육(실습 2시간)
-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(이론 1시간, 실습 3시간)  
(실습 : 심폐소생술, 하임리히법,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)
- 이론시험(※교육전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응시, 20문항 출제 60점이상자 합격)
-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 수여(※교육전과정 이수 및 이론시험 합격자)  
※ 교육수료 유효기간은 교육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

#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요원 관련 관광진흥법 주요 내용

## ○ 관광진흥법 주요내용

**제32조 (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)**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(이하 "테마파크업자"라 한다)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·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.

## ○ 관광진흥법 시행령(행정처벌) 주요내용

-별표 2,3 행정처분(과징금) :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 등의 안전·위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
행 정 처 분 기 준				과 징 금 부 과 기 준		
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	종합	일반	기타
시정명령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1개월	취소 (신고 3개월)	2,000만원	1,600만원	1,200만원

## ○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주요내용

[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] 제9~11호

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안전·위생 기준 (제39조의 2 관련)

9. 사업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.
10.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가.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.
  - 나.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,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,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.
  - 다.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, 대한적십자사나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. 다만,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.
11.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,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.

## ○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-2181호(“2024.4.18.”)“테마파크업 안전관리 감독 철저 협조 요청” 관련 내용

### ○ 안전요원 배치(관광진흥법 시행규칙[별표10의2]10.가.나.)

- ①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②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,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,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해야 한다.
  - ▶ 안전요원의 배치는 수심별 각 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닌 개별기구별 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

### ○ 안전요원 자격(관광진흥법 시행규칙[별표10의2]10.다.)

- ①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.
- ② 대한적십자나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
- ③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
  - ▶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
- ④ 다만,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
  - ▶ 한국테마파크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